

- 일 시 : 2021. 6. 25.(금) 11:00
- 장 소 : 온라인(비대면)

2021년 6월 통장 월례회의 자료



가정2동

『2021년 6월 통장 월례회의 자료 목차』

주요 홍보내용 (27건)	페이지
① 2021년도 제3기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3
② 2021 경제총조사 실시	4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	5
④ 2021년 여성안심 지킴이집 홍보 자료	6,7
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8
⑥ 폐아이스팩 걱정 처리 방법	9
⑦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요령	10,11
⑧ 서로e음 카드 현장서비스 '너나e음' 안내	12,13
⑨ 「승용차선택요일제」 시민참여 안내	14
⑩ 2021. 6월중 교통안전 테마캠페인	15
⑪ 개방주차장 지정사업 참여 신청	16
⑫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7
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18
⑭ 치매검진 사전예약제	19
⑮ 2021년 소규모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20
⑯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21,22
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	23
⑱ 아동학대 예방 홍보	24
⑲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5
⑳ 배달앱으로 외식 할인	26
㉑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27
㉒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28
㉓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29
㉔ 주거급여 사업 안내	30
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31
㉖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신청 안내	32
㉗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33

- 2021년도 제3기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 - 취미·교양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가정2동 주민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강안내

- ◆ 모집기간 : 2021.06.28.(월) ~ 06.30.(수), 09:00 ~ 18:00 (선착순모집)
- ◆ 접수방법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선착순 방문접수
 - ※ 본인 신청 원칙 (아동 프로그램 친부모 신청 가능 이외 대리 신청 불가)
 - ※ 수강대상 1인 1강의 신청 원칙 (추가 신청 시 대기자 명단 등록)
- ◆ 모집강좌 : 에스셈(주산반), 아동미술
 - ※ 실내 체육프로그램 (탁구, 줌바댄스) 잠정휴강
- ◆ 수강기간 : 2021. 07. 01.(목) ~ 09. 30.(수)
- ◆ 수강장소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2층(강의실)
- ◆ 수 강 료 : 3개월과정 30,000원 (현금 및 계좌입금) 【교육재료비 본인부담】
- ◆ 문 의 :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 ☎ 718-3743

수강일정

프로그램명	운영주기 (시간)	모집대상	모집인원	교육장소	수강료	비고
에스-셈(주산)	(매주) 화·목 16:30 - 18:00	유아·초등	10명	2층 다목적실	30,000원 (월 10,000원)	교재비 별도 선착순 마감
아동미술(A반)	(매주) 화 16:00 - 18:00	유아·초등	6명	2층 강의실	30,000원 (월 10,000원)	교재비 별도 선착순 마감
아동미술(B반)	(매주) 금 16:00 - 18:00	유아·초등	6명	2층 강의실	30,000원 (월 10,000원)	교재비 별도 선착순 마감
탁구	코로나19 관련 실내 체육프로그램 잠정 휴강					
줌바댄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수강인원 축소 및 운영 사항 변동 가능

【 가정2동행정복지센터 ☎ 718 - 3743 】

2021 경제총조사 실시

❖ 정부에서는 산업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 조사를 통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21. 6. 14. ~ 7. 30.

내 용 : 조사기준일(2020.12.31.)을 기준으로 서구 관내 모든 사업체 중 우리구 30,452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통계조사인 2021 경제총조사를 실시

대 상 :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비대면조사) 참여 혹은 대면 면접조사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신 업체는 대면 면접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대면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 접속 후 참여

- 비대면조사기간 : 6. 14. ~ 7. 9.(26일간)

○ (대면조사) 조사원 방문 시 조사 협조

문 의 :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560-4065)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560 - 4065 】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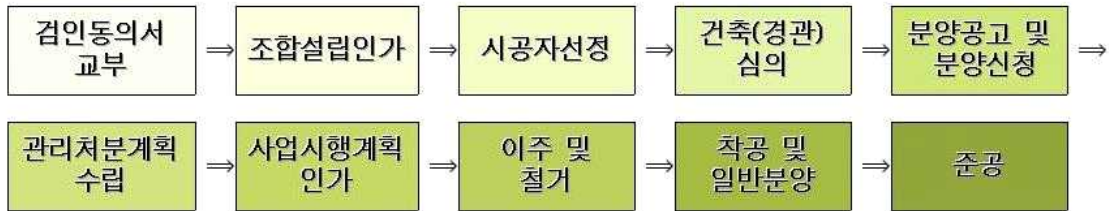
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 -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요건
 - 도시·군계획시설 및 6m이상 도로(4M 초과 통과도로 없을 것)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2/3이상, 기존주택 20호(세대) 이상
- ※ 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사업추진 절차



☑ 추진 시 유의사항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

-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
-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 종전자산가치 평가, 건축 규모 등의 변경, 사업 기간,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변동되어 향후 **분담금 추가 발생 가능**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

-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로 인천도시공사(☎.032-260-5315~6)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무료 제공(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시 신청 가능)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주민(조합원)**이 받음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누리집(renewal.incheon.go.kr)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정비사업 안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확인 가능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정비 사업

-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조합)이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

【 부서명 :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 560 - 4594 】

2021년 여성안심 지킴이집 홍보 자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여 도움을 요청, 비상벨을 통하여 경찰청 112 핫라인으로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함께 귀가함으로써 주민과 편의점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이용방법 : 안심지킴이집 현판[붙임] 설치된 편의점으로 대피 후 경찰에 신고 요청
- 흐름도



【 부서명 : 가정교육과 ☎ 560 - 5737 】

[붙임1] 안심지킴이집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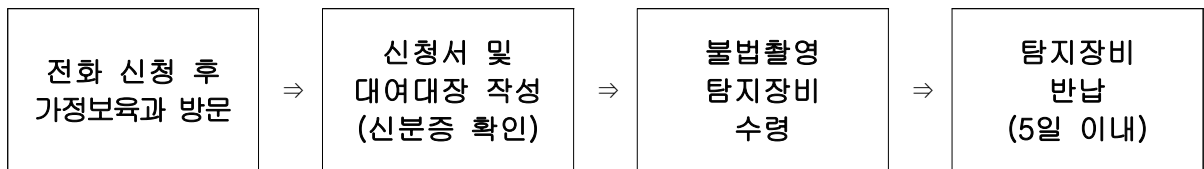


** 출입문이나 입구 주변 유리에 부착되어 있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지원

- 추진기간 : 연중
- 대여대상
 - 다중이용시설(숙박업소, 영화관, 병원, 상가, 식당, 노래방 등) 민간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
 -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
 - 개인(구민 전체)
- 대여기간 : 5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 대여장비 : 1개소 당 1세트 (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
- 대여방법 : 전화 신청 후, 신분증 지참 방문 대여



- 문 의 : 서구청 가정보육과 (☎ 032-560-5737)

【 부서명 : 가정보육과

☎ 560 - 5737 】

폐아이스팩 적정 처리 방법

□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실온상태의 아이스팩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

※ 수거된 아이스팩은 관내 소상공인들에 의하여 재사용 됩니다.

재사용 가능 아이스팩 (젤타입의 반듯한 사각형)	재사용 불가 아이스팩 (오염, 훼손, 물성분, 주입구형태)
	<p>오염 등 사용감이 심하게 남은 경우</p>  <p>▲ 젤 타입 아닌 충전재</p> <p>종이 등 기타 재질 외포</p>   <p>▲ 주입구가 있는 형태</p>

□ 재사용 불가 아이스팩 적정 처리 방법

○ 폴리아크릴화나트륨 등 **고흡수성 수지**가 충전물질로 사용된 아이스팩

- 포장재와 내용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가능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충진물질)은 중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통째로 버릴 때는 중량제 봉투로 배출

○ 충전물질로 **100% 물**을 사용한 아이스팩

- 아이스팩을 찢어서 내용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포장재는 분리배출

※ 아이스팩 포장재에 표기된 충전물질의 성분 및 포장재의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 후 배출 처리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 - 3374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요령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거 주3회 확대 [수거시간: 오전 6시 ~ 낮3시]
- 배출시간 - 동별 수거전일 저녁8시 ~ 저녁12시
- 배출장소 - 내 집앞, 내 상가 앞
- 수거일시

▶ 재활용품 수거 주3회 확대, 음식물류폐기물과 동일하게 배출

생활폐기물 종류	지역	수거일
일반쓰레기(종량제)	모든지역	월,화,목,금,토
재활용품	청라동(상가 및 단독주택)	월,수,금
음식물류,재활용품	연희동, 경서동, 가정1동, 석남1동(168~192, 194~206, 213~224, 444~455, 477~479, 511~526), 가좌2·3·4동, 검단동(마전지구),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검암동, 백석동, 시천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456-467, 480-484, 495-510),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검단동(금곡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화,목,토

- 배출방법 - 재활용전용봉투 또는 무색투명한 비닐봉투에 묶어서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 배출시 마대·불투명봉투(검정비닐) 절대 사용 금지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 병, 캔,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이물질 제거하고 물로 세척 후 품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재활용전용봉투 또는 무색투명봉투에 배출
- 종이박스 등 재활용전용봉투에 넣기 어려운 재활용품은 정리하여 묶어서 배출
- ※ 재활용봉투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전용봉투 배부안내

- 배부대상 : 서구 관내 다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자
- 배부처 : 각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 봉투종류 : 30L, 50L, 100L (비닐류, 무색PET류, 고철·캔·유리류)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배출한다 (정기적으로 배출)
- 정리한다 (정리하여 배출)
- 분리한다 (종류별로 분리)
- 선지정한다 (지정된 장소에)

일관번호 음표를 통해 재활용을 배출 신청제가 실시됩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30ℓ) 비닐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배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이 봉투에는 페비닐류만 담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비닐 주요종목 : 커피믹스봉투, 과자봉지, 라면봉지, 빵봉지, 한약팩, 1회용비닐봉투, 위생장갑, 오일되지 않은 모든 비닐류
- 이 봉투에 다른 재활용종류 또는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 배출 가능 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635)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배출한다 (정기적으로 배출)
- 정리한다 (정리하여 배출)
- 분리한다 (종류별로 분리)
- 선지정한다 (지정된 장소에)

일관번호 음표를 통해 재활용을 배출 신청제가 실시됩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50ℓ) 무색 투명 패트병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배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이 봉투에는 음료, 생수 투명 패트병만 담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색 패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의 구분해 분리배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봉투에 다른 재활용종류 또는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 배출 가능 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635)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배출한다 (정기적으로 배출)
- 정리한다 (정리하여 배출)
- 분리한다 (종류별로 분리)
- 선지정한다 (지정된 장소에)

일관번호 음표를 통해 재활용을 배출 신청제가 실시됩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100ℓ) 고철·캔·플라스틱·유리·종이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배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이 봉투에는 고철, 캔, 플라스틱, 유리, 종이류만 담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가능한 품목중 비닐류, 무색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담아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봉투에 재활용종류가 아닌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 배출 가능 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635)

폐페트병(음료·생수)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기

투명 페트 / 기타 플라스틱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골판지 박스

택배 손상스티커, 테이프 제거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해주세요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주세요

신문·책자류

스프링은 떼어서 따로 배출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후 배출해주세요

종이팩

- 종이팩은 일반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주세요.
- [종이팩 교환사업] 종이팩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나 휴지로 교환해드립니다.

플라스틱류

꼭 이물질·물기제거 후 재활용용으로 배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음료 용기 > 음박지 제거
- 물티슈 > 컵 분리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워주세요.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재활용이 안돼요!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 불연성(녹색)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주병, 맥주병()을 소매점에서 반환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세요.

【 부서명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560 - 1932 】

서로e음 카드 현장서비스 '너나e음' 안내

이제 우리 동네 모든 **NH농협은행**에서 인천e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내 명의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인천에선 너도e음! 나도e음! 우리 모두 「인천e음」

□ 너나e음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농협은행에서 서로e음 (인천e음 포함)신규발급, 잔액충전, 충전취소*를 할 수 있는 현장 기반 서비스

(※ 단, 충전취소는 당일 충전금액에 한해서만 가능)

□ 대 상 : 인천e음 모바일 app[앱] 사용이 불가능한 자

- 스마트폰 미사용자(2G폰 등), 본인명의로 아닌 휴대전화 사용자 등
※ 기존 모바일앱(핸드폰) 가입된 사용자는 서비스 불가

□ 내 용 : 농협은행에서 신규발급, 잔액충전, 충전취소 업무 수행

□ 충 전 처 : 인천 전 NH농협은행 지점(서구 7개 지점)

□ 인센티브 :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자동사용

- (방식) 결제내역, 충전잔액 및 캐시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



□ 인천 관내 농협은행 명단 (서구 7개 지점)

연번	지점명	주소	연락처
1	강화군지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7	032-934-3600
2	강화군청(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032-934-5575
3	북인천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49	032-520-9500
4	작전동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40 (작전동 422-4)	032-552-4121
5	계산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86 (용종동 210-3)	032-551-8545
6	주안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68 (주안동 1560)	032-431-7112
7	인천웅진군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 (주안동 195-3)	032-862-0021
8	웅진군청(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 627-608)	032-885-4492
9	구월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87 (구월동 70-14)	032-465-9771
10	간석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8 (간석동 207-2)	032-23-6431
11	남동공단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고잔동 636)	032-817-1511
12	인천영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6	032-456-6800
13	인천논현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93 (논현동 649-4)	032-437-1500
14	인천소래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28 (논현동 671-1)	032-437-1721
15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 (구월동 1464)	032-442-0021
16	인천시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032-426-2700
17	인천시교육청(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032-423-1822
18	송림동지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98 (송림6동 60-1)	032-763-0860
19	도화센트럴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00 광장프라자 2층	032-865-0212
20	부개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59 (부개동 283-13)	032-511-3411
21	산곡동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32 (산곡2동 99-6)	032-527-2511
22	청천동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53-1 (청천1동 15-3)	032-529-9751
23	부평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부평1동 549-3)	032-510-8600
24	동암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44 (십정2동 402-6)	032-427-4601
25	일신동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12 (일신동 108-5)	032-503-8761
26	인천삼산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94 (삼산동 426-7)	032-527-6861
27	신현동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09 (석남동 455-7)	032-582-4103
28	드림파크(출)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58)	032-562-7383
29	인천가좌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01 (가좌2동 79-12)	032-578-1453
30	인천서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0 (당하동 22-28)	032-565-6300
31	청라시티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0 (연희동 799-2)	032-561-5227
32	청라호수공원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9 (청라동 152-11)	032-569-4670
33	환경연구단지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2-1)	032-563-8155
34	동춘동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만우금로 92 (동춘동 937-9)	032-817-9872
35	연수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만우금로221번길 13 (청학동 498-2)	032-818-3674
36	송도캠퍼스타운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 (송도동 149)	032-439-5601
37	송도GCF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24-4)	032-859-6010
38	송도웨스턴파크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68번길 100	032-858-8325
39	송도시티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송도동 4-1)	032-851-9130
40	송도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16	032-858-0022
41	신포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8 (사동 3-1)	032-763-9002

【 부서명 : 경제정책과 지역화페팀 ☎ 560 - 3262 】

「승용차선택요일제」 시민참여 안내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https://www.no-driving.incheon.go.kr>
승용차선택요일제를 통해 환경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승용차 요일제 시민참여 안내



승용차요일제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 대상**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적용 시간** 월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시~오후 8시)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 교통관련 부서
온라인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



※ 참여신청 체계도



참여자 혜택

공공 부문	민간 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일부(중구청 등)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청라여성병원 2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액은 환수됨)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560 - 4852 】

2021. 6월중 교통안전 테마캠페인

2021. 6월중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안전속도 5030 준수, 아이들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교통안전 백신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4.13.경찰청장,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중]

① 안전속도 5030은 어떤 정책인가요?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요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② 안전속도 5030은 왜 하는 건가요?

안전속도 5030은 수십년간 이어온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①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8년) |

구분	우리나라 기준	OECD 회원국 대비	
		사망자 수 평균	순위
승차 중	1.4명	2.3명	8위
보행 중	2.9명	1.1명	28위

③ 속도를 10km/h 낮춘다고 교통사고가 줄어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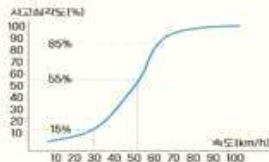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가능성 비교

60Km
시속 60km 일때 사망가능성 85%

50Km
시속 50km 일때 사망가능성 55%

30km
시속 30km 일때 사망가능성 15%



■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도시 인천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④ 안전속도 5030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19.4.17. 공포, '21.4.17. 시행)

현행		개정안	
일반 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일반 도로	도시부 > 50km/h 이내 ※ 단, 소용량 횡포 시 60km/h
	▶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도시부외 > 좌 통



❖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가연초등학교 이지호

즐거워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560 - 4853 】

개방주차장 지정사업 참여 신청

공민 서구
행정복지 서구
건강재활 서구



모두에게 ÷ 모두에게 + 개방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받으세요!

- + 신청기간 : 2021년 3~12월
- + 신청자격 : 부설주차장이 있는 서구 소재
건축물(종교시설, 상가, 아파트 등) 소유자(최소 5면 이상)
- + 지원내용 : 시설비 등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무료지원:2천만원 / 유료지원:2천5백만원)
- + 진행절차 : 신청 ▶ 검토 ▶ 협약 ▶ 개방
- + 접수/문의 : 032)560-0838(주차관리과)



인천광역시 서구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1963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 ❖ 아파트 내 주민 부대 ·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996. 6. 8일 이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아파트 내 부대 ·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 ※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사전 득한 경우

- 선행절차 :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서 선임한 관리 사무소장이 전체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위허가 (용도변경)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허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주차구획 1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 주차구획 및 노면표시, car stopper, 부대시설과의 경계표시 (경계석, 조경 등), 조명시설, 방범시설 비용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196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 - 0149 】

치매검진 사전예약제

□ 치매검진 사전예약제

○ 코로나-19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치매검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치매검진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 추진기간: 2021년 1월~ 12월 연중
- 검사대상: 지역주민(만 60세 이상)
- 검사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서구 봉오재 3로 94번길 11, MK타워 5층)
- 신청방법: 사전예약제(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 검진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인지선별검사 (검사시간 :20분)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실시 (검사시간 : 1시간)	치매원인(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 단계별 검사진행은 1단계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일 경우만 해당

→ 치매전문의 진료실 운영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30

매주 금요일 09:00 ~ 16:30

※ 의사진료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검진비용 : 1단계, 2단계는 무료
- 약도



【 부서명 : 치매정신돌봄과 ☎ 718-0630 】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추가 공모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추가 공모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1. 6. 21.(월) ~ 2021. 6. 30.(수) 18:00 마감
- 제 출 처 :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련 부서
-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21. 6. 30.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 | | |
|----------------------------|--------------------------|
|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440-4753) | - 동구 건축과 (☎ 770-6625) |
| - 미추홀구 건축과 (☎ 880-4453) | - 연수구 도시주택과 (☎ 749-8623) |
| - 부평구 건축과 (☎ 509-6887) | - 서구 주택과 (☎ 560-4739) |

-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지원 기준 : 개별공동주택 300만원 (총 14개소)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¹⁾
(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1) 소규모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

- 참여 방법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 공모 분야

사업분야		주요 프로그램
필수	1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① 분리수거 분야 ② 층간소음 예방 분야 ③ 에너지 절약 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선택	1 소통 / 주민 화합	① 주민 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풀앗이 및 문화 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 / 체험	① 친환경 제품 만들기 ② 에너지 절약 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 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 교류 ⑦ 생태 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 교실 ② 교양 ③ 기타 (연주) ④ 주부 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 교육 ② 보육 / 공동 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 예방
	6 이웃 돕기 / 사회 봉사	① 이웃 돕기 ② 봉사 활동 ③ 재능 기부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8 기타	창의적인 분야

*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사업(1-8) 중 택일

-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8월 예정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풍수해보험 개요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보험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지역	비고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주택·온실	개별·단체	전국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주택	단체	전국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주택	개별·단체	전국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공장	개별·단체	전국	

□ 풍수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 혜택

○ 보상종류

- 풍수해보험 II -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등)
- 풍수해보험 III - 실손·비례보상형

○ 보험료 지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보상 가능

*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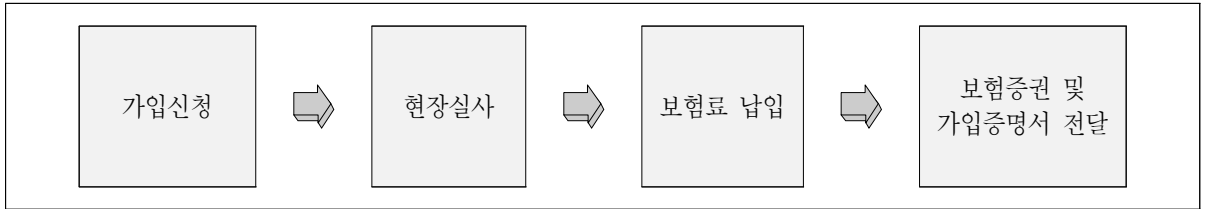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8.4~92%, 기초생활수급자 87~92%, 소상공인 70~92%

○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II)

- 가입 시 주민 부담 보험료 10%를 추가지원

□ 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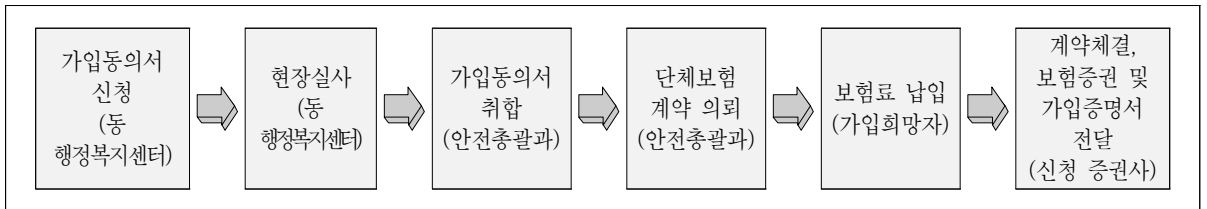
○ 보험사를 통한 개인가입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	02-2100-5104	02-2100-5105	02-2100-5106	02-2100-5107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II)



* 서구청 안전총괄과(032-560-4704)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II 가입 희망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수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 안전총괄과로 필요서류(가입동의서 원본, 건축물등록대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

- ① 신청기간 : '21. 4. 1. (목)부터 선착순 신청
- ② 지원대수 : 4,200대 * 전년도 3,387대 대비 증 813대
-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 가능성 있음
- ③ 신청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도로공사 장애인 감면단말기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제외
- ④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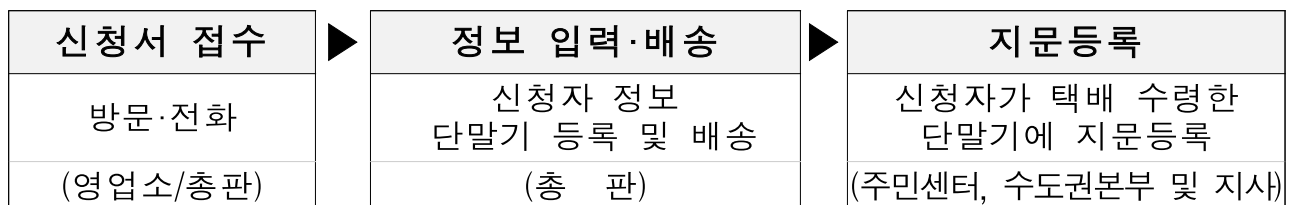
⑤ 신청방법

구 분		주소 및 위치	전화번호	신청방법
영(틀) 업(개) 이(소) 소(트)	인천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서운동 55-76)	032) 718-2190	방문
	남인천	인천시 남동구 음실로 117번길 32 (운연동 437-1)	032) 718-2191	방문
총 판	하이원	인천시 남동구 장자로 5번길 18-24 (장수동 780-9)	1899-6804	방문 또는 전화

- 접수 시 필요서류 : 단말기 발급 신청서, 이용약관 동의서, 통합복지카드 사본, 현 주소 등록지 증명가능 자료 각 1부

* 전화 접수 시, 관련 서류는 팩스(032-472-4536) 또는 메일(hione07@naver.com)을 통해 제출

⑥ 지원체계



* 단말기 배송비 3,000원은 신청자 본인 부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440-2968】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래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육아 행동은 아동에게는 학대이며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첫째, 신체학대

때리지 마세요.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 및 체벌은 아동학대입니다.

둘째, 정서학대

마음이 아파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동은 아동학대입니다.

셋째, 성학대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넷째,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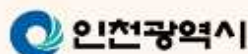
엄마, 아빠 어디갔어요~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양육환경(이혼, 생활고 등)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어떻게 보호 하나요?	아동과 그 보호자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 ①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친인척 등) ②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위탁 ③ 입양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
상담·신청 어디서 하나요?	아동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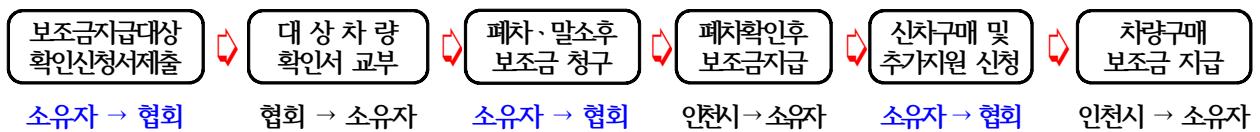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440-2855】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2.1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금액 : 차종·연식에 따른 보험개발원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을 범위내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60만원, 저소득층 10% 추가지원
 - (3.5톤미만, 상한액 600만원 적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 (차량구매 추가지원)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매 후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 지원
 - ☞ 총중량 3.5톤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시 지급)	추가지원(신차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만원		
	7,500cc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만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 제출 or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신청
 -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협회 e-mail : 1577-7121@aea.or.kr
 - 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신청 > “조기폐차”
 -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문의 또는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인천 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440-3550】

배달앱으로 외식 할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집에서 즐기는 외식

배달앱으로 외식하고 할인받자

2021. 5. 24. 오전 10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 방법



1

카드사용모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기존 용모자는 용모 불필요

2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온라인 주문·결제



참여 배달앱 : 배달특급, 배달의명수, 명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 동일 카드사 1일 2회 한정
- 배달비·할인금액 등 포함한 최종결제액 기준

반드시 용모한 카드로 온라인 결제

※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 용모카드 연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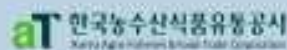
3

4회 결제 시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3회 사용 후 4회째 사용 금액에 대하여
1만원 환급(차감 또는 청구 할인)

※ 기존 용모자의 실적은 누적하여 합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하단 참조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입니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 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1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수기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자료제공: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 ☎ 02-2100-3108)

□ 추진배경

-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침해 논란 및 허위 기재** 우려 지속 제기

* 명부에 번호 기재했더니...“외롭다” 낯선 연락 잇따라 ('20. 9. 9. SBS)

** 눌러보니 없는 전화번호...못 믿을 코로나 출입명부 ('20. 11. 30. 뉴시스)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대체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개요)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 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로 구성) 발급
- (발급·이용) 이용자는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

일시	장소	입출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2.19. 14:15	✓	종로구	127134나	

- (역학조사) 질병청·지자체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역학조사에 활용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산입양 축하금	- 19.7.1.이후 출생·입양어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서구지역화폐 사용가능)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서구지역화폐 사용가능)		

○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19.7.1.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 단, 19.7.1.이전부터 계속해서 육직중인 경우 7월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가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센터 발행) 필요 지원

주거급여 사업 안내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60,818	2,982,871	3,373,739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포(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가구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400)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만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한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제주)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신청 안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1946.12.31.이전 출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금액** 연 1회 8만원(인천e음카드 충전)
- 신청기간** 2021. 5. 3.(월) ~ 10. 29.(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어르신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 사 용 처** 인천 소재 건강관리, 위생관리, 여가, 전통문화 등 소상공인 관련 가맹점
- 사용기간** 지급(충전) 다음날부터 2021. 12. 31까지(미사용액 잔액 소멸, 이월불가)
- 문 의**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1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 사업종류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
본인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월 10만 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34,000원, 최대 627,000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295,000원, 최대 496,000원)	본인저축액에 1:3 매칭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차지원 =14,400,000원+ a)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단, 전 차수의 신청·선발인원에 따라 현 차수의 최종 선발인원은 가감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신청서
- (4대보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소득신고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 (임시·일용직) 고용임금확인서

문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560-3069), 자립지원과 자활지원팀(560-5715)